

스웨덴의 실업부조제도

손혜경 (스웨덴 옘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연구원)

■ 머리말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확립된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소위 노동우선주의(Arbetslinjen)의 원칙하에 운영되어 왔다. 실업과 관련하여 노동우선주의라는 것은 실업 이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안내해 주고, 현금부조는 이런 과정에서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스웨덴의 현재 실업부조제도는 이런 원칙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실업부조제도는 실업보험제도 및 공공부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실업부조는 실업보험 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부조이고 공공부조는 임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제공하는 현금부조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첫째로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의 관계 및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로 실업보험, 실업부조 그리고 공공부조의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는 검토한다. 셋째로 실업부조의 적용범위와 지급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제도 수급자들의 구성 등을 살펴보고도 록 한다.

1) Junestav, Malin(2009), "Arbetslinjen — constant och i standing förändring", in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09:3*.

■ 스웨덴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의 실업부조제도는 실업보험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일부 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위해 19세기 말부터 자발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한 것을 정부가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걸쳐 193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을하기로 결정해 수립된 제도이다.²⁾

스웨덴 정부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보험기금에 재정지원을하기로 결정한 이후 네 가지 중요한 이슈가 거듭 토론되어 왔다. 첫 번째 이슈는 실업보험기금 가입을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슈는 재정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세 번째 이슈는 보험원칙을 유지할 것인가 또는 노동우선주의를 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이다.³⁾ 수차례의 토론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는 방식은 자발적 실업보험 가입 원칙과,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그리고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에 대해 노동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알선에 주고 이에 응할 경우 현금부조를 해주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스웨덴의 정부가 공인하는 실업보험기금은 30개로 이들 실업보험기금은 실업보험 감독위원회(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AF)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⁴⁾ 1966년 구직자에 대한 현금지원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경우 그 이전까지는 지역 코뮌에서 현금 지원을 했는데 이제 국가의 책임사항으로 결정되었다. 실업보험기금에서 구직자에게 현금부조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5) 6)} 실업보험에

2) Sjögren, Gabriella & Wadensjö, Eskil(2007), “스웨덴의 겐트시스템과 실업보험제도” *International Labor Brief* 5(9), p.13.

3) Erici, Bemt and Roth, Nils(1981),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 Sverige 1935~1980*, Stockholm: Arbetslöshetskassomas samorganisation.

4) 스웨덴 실업보험 감독위원회(IAF) 홈페이지.

5) Ibid., p.77.

6) 스웨덴의 행정단위는 크게 중앙정부, 20개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 램(Län), 그리고 290개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코뮌(Kommun, 영어로는 municipality)으로 나뉘어져 있다. 코뮌은 스웨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거의 모든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코뮌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는 상당히 다양한데 그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전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담당했는데 현재는 스웨덴 사회보험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급여 수령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보험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그 기간에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최소 매일 3시간 또는 일주일 평균 17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국영고용센터에 등록해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아야 하며 고용센터 직업알선가와 협력해 개인 구직계획표를 작성해야 한다.⁷⁾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실업보험기금 가입조건 및 실업급여 수령조건을 충족하는 일은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 1>은 스웨덴의 15~74세 사이의 전체 노동인구, 실업보험 가입자 및 실업보험 미 가입자의 상황을 보여준다.

<표 1> 노동시장인구 구성표

(단위: 천 명)

	2012년 1월 말		2012년 6월 말	
총인구	9,487		9,514	
총 노동가능인구(15~74세)	7,097		7,110	
경제활동인구	4,918	100.0	5,267	100.0
취업자/취업률	4,524	92.0	4,802	91.2
실업자/실업률	394	8.0	465	8.8
실업보험 가입자/가입자비율	3,401	69.2	3,402	64.6
실업보험 미가입자/미가입자비율	1,517	30.8	1,865	35.4

자료: 스웨덴 통계청(SCB), 인구통계; 스웨덴 통계청(SCB), 노동력 조사(AKU); 스웨덴 실업보험 감독위원회(IAF).

중 규모가 큰 코뮌으로는 스톡홀름(86만 명), 예테보리(52만 명), 말뫼(30만 명) 등이며, 규모가 작은 코뮌은 인구가 약 3천 명 정도된다(스웨덴 통계청(SCB), 인구통계).

7) 스웨덴 실업보험법(1997: 238), Lag om arbetslöshetsförsäkring.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의 총인구와 노동가능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6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012년 1월에 비해 34만 9천 명이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도 27만 8천 명이 증가하였다. 고용참여인구 대비 실업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69.2%에서 64.6%로 하락한 반면, 실업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은 30.8%에서 35.4%로 증가했다. 과거의 조사의 의하면 실업보험 미가입자의 절반은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⁸⁾ 특히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 유동성의 증가로 16~25세 청년과 스웨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외국인들이 스웨덴의 실업보험기금 가입조건 및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스웨덴 정부에서는 이들을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몇 번에 걸쳐 노동자의 실업보험기금 의무 가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아직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보험 미가입자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부조는 실업보험제도 운영 이후 계속 논의되는 문제이다. 실업보험 미가입자를 위해 2007년 12월 1일부터 스웨덴의 국영고용센터에서는 90일간 실업을 한 청년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현금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활동부조(Aktivitetsstöd)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발부조(Utvecklingsersättning)이다. 보통 청년들은 이런 현금부조를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해결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활동부조와 개발부조를 합하여 최고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¹⁰⁾ 또한 일반 구직자 중 실업보험급여 수령 조건에 미달하는 자도 활동부조를 받고 있다.

덧붙여 구직자를 위한 활동부조와 개발부조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코뮌에 공공부조(스웨덴어로는 Ekonomiskt bistånd, försörjningsstöd 또는 social bidrag, 영어로는 social assistance 또는 public assistance)를 요청할 수 있다.¹¹⁾ 이하에서 활동부조와 개발부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8) Erici, Bert & Roth, Nils(1981),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 Sverige 1935~1980*, Stockholm: Arbetslöshetskassomas samorganisation, p.74.

9) Svenska Dagbladet, 2011-06-13, "Svenskarna vill inte ha obligatorisk a-kassa".

10) 스웨덴 국영 고용센터(Arbetsförmedlingen), 2011-09, "Faktablad för arbetssökande", http://www.arbetsformedlingen.se/download/18.4b7cba481279b57bec180006146/akts_sok.pdf

11) 기초생활비 이외에 응급 상황으로 발생한 병원치료, 치과치료, 안경 등에 대해 추가로 경제 지원

■ 활동부조와 개발부조

활동부조¹²⁾

활동부조는 일반 실업자가 국영고용센터(Arbetsförmedlingen)에 구직 등록을 한 이후 국영고용센터가 권유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현금부조이다.

활동부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는 아래 프로그램 항목이 포함된다.

- 노동 및 개발 보장
- 청년 실업자를 위한 노동보장
- 작업장 또는 회사 소개(Arbeitsplatsintroduktion)
- 실습(Praktik): 노동실습, 현장실습, 직업능력검진, 실습능력개발
- 자영업 창업에 대한 도움(Starta eget)
- 시민교육기관에서 초등 및 고등학교 자격 취득 기회 제공
-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실업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활동부조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대신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활동부조는 사회보험국에서 지급된다.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 활동부조금의 일일 최고액은 세금 공제 전 680크로나에 달한다. 실업보험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5세 이상의 구직자가 국영고용센터가 권유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100% 참여하는 경우 일일 활동부조금은 223크로나이다. 만일 구직자가 주중 다른 일을 할 경우 그날에 대해서는 활동부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일 하루 중 몇 시간

요청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코뮌에 생활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로 확정된 것은 1945년 이후이다(2012-08-17, "fattigvård", <http://sv.wikipedia.org/wiki/Fattigv%C3%A5rd>).

12) Arbetsförmedlingen, 2011-09, "Faktablad för arbetssökande, aktivistsöd", http://www.arbetsfomedlingen.se/download/18.4b7cba481279b57bec180006146/akts_sok.pdf

만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활동부조금이 차감된다. 만일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100% 참여하고 대신 일반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할 경우에는 활동부조금이 차감되지 않는다.

아래는 활동부조제도의 구체적 운영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 ① 국영고용센터가 구직자에서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유한다.
- ② 사회보험국에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얼마만큼의 활동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집으로 편지를 보낸다.
- ③ 활동부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회보험국에서 보낸 활동부조금 및 발전부조금에 대한 서약이라는 양식을 기입하여 사회보험국에 송부한다.
- ④ 매월 활동한 내용에 대해 사회보험국에 보고서를 보낸다.
- ⑤ 보통 보고서가 사회보험국에 접수된 지 14일 이후에 본인이 첨부한 은행 계좌번호로 활동부조금이 입금된다.

보통 사회보험국에 등록을 하면 모든 처리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송금계좌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가 중 병이 났을 경우에는 국영직업알선소, 사회보험국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개발부조¹³⁾

개발부조는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실업자가 국영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이후 국영고용센터가 권유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현금부조이다. 만일 청년이 개발부조를 받던 중 25세가 되었을 경우 대신 활동부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발부조는 사회보험국에서 지급된다. 2012년의 경우, 국영고용센터가 운영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100%로 참여하고 고등학교를 마친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개

13) Arbetsförmedlingen, 2011-09, "Faktablad för arbetssökande, aktivistsöd", http://www.arbetsformedlingen.se/download/18.4b7cba481279b57bec180006146/akts_sok.pdf

발부조금의 일일 최고액은 140크로나이며,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개발부조금의 일일 최고액은 이보다 훨씬 낮은 48크로나이다. 20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일 최고액 140크로나를 받게 된다. 개발부조금은 면세이다. 개발부조금은 매년 물가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개발부조금 수령자가 주중 다른 일을 할 경우 그날에 대해서는 개발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100% 참여하고 대신 일반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할 경우 개발부조금은 차감되지 않는다.

아래는 개발부조제도가 구체적 운영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 ① 국영고용센터가 구직자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한다.
- ② 사회보험국은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얼마만큼의 개발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집으로 편지를 보낸다.
- ③ 개발부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회보험국에서 보낸 활동부조금 및 발전부조금에 대한 서약이라는 양식을 기입하여 사회보험국에 송부한다.
- ④ 매월 활동한 내용에 대해 사회보험국에 보고서를 보낸다.
- ⑤ 보통 보고서가 사회보험국에 접수된 지 14일 이후에 본인이 첨부한 은행 계좌번호로 활동부조금이 입금된다.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가 중 병이 났을 경우에는 국영고용센터, 사회보험국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험국은 스웨덴에서 실업보험 이외의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인데 모든 재정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부조와 개발부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보험 항목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

■ 실업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재정

실업보험급여 재정은 실업보험기금이 가입자가 내는 실업보험보험료(unemployment insurance fee)를 모아 정부에 내는 수수료, 국세(governmental tax), 사업주 및 개인사업자 부담 급여세(pay-roll tax)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부조의 대부분은 사업주 부담 급여세(pay-roll tax)로 그리고 비교적 작은 부분이 국세(governmental tax) 등 운영되고 마지막으로 극빈층을 보호하는 공공부조는 100% 지방세(municipal tax)로 운영된다.

■ 실업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통계

〈표 2〉 실업보험 통계

	실업보험 가입자 수 (천 명)	실업보험급여 수령자 수 (천 명)	총실업보험 지급액 (백만 크로나)	평균지급일수 (일)
2009	3,360	565	19,561	45
2010	3,370	519	17,615	37
2011	3,399	406	13,112	33

자료 : 실업보험기금감독위원회(IAK) 통계자료.

〈표 2〉를 통해, 실업보험 가입자 수는 2009년 336만 명에서 2011년 339만 9천 명으로 약 4만 명 정도 증가하였지만 실제 실업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56만 5천 명에서 40만 6천 명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실업보험급여 지급액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평균 실업급여 수령일수도 45일에서 33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업보험급여는 소득대체원칙을 따라 실업보험 가입자의 실업 전 임금 규모와 비례해서, 최저 일일 320크로나에서 최고 680크로나까지 지급된다.

〈표 3〉 실업부조 통계

	수급자 수 (천 명)	총 실업부조 지급액(A) (백만 크로나)	총 사회보험 지급액(B) ¹⁴⁾ (백만 크로나)	A/B 비율 (%)
2009	222	10,293	211,998	4.9
2010	358	16,157	210,640	7.7

자료 : 스웨덴 사회보험국(Försäkringskassan) Socialförsäkringen i siffror 2010, 2011.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부조 지급액이 전체 사회보험 지급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4.9%에서 2010년에는 7.7%로 증가했다. 실업부조 수급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보험 가입 자격이나 수급 자격이 없는 구직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실업부조 수급자의 증가는 〈표 2〉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통해 설명된다.

2010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66억 1,500만 크로나가 지급되었으며, 실업부조는 161억 5,700만 크로나가 지급되었다.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지급액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국영고용센터에서 2012년에 발표한 자료로 외국인 출신자가 스웨덴 출신자에 비해 남녀 불문하고 실업 시 실업급여나 현금부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24세 사이의 청년들이 25~64세의 구직자들보다 실업급여나 현금부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외국인 청년들이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지 못할 경우 최후의 해결책으로 공공부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¹⁵⁾

14) 사회보험 총지급액은 노령연금을 제외한 것이다. 노령연금을 포함한 총사회보험 지급액은 스웨덴 전체 국민소득의 약 15%를 차지한다.

15) 국영고용센터(Arbeitsförmedlingen)(2012), “Andelen av öppet arbetslösa och deltagare i program som får ersättning”, Working Paper 2012:1, www.arbetsformedlingen.se

〈표 4〉 매월 평균 실업자 수와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 수에 대한 통계(2011년 1~11월)

(단위 : 명, %)

	여성				남성			
	25~64세		20~24세		25~64세		20~24세	
	스웨덴	외국	스웨덴	외국	스웨덴	외국	스웨덴	외국
실업자(A)	44,092	37,024	7,541	3,265	49,649	38,302	10,106	3,717
실업부조 수급자 겸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가자(B)	41,758	19,371	15,712	2,794	38,111	20,709	19,915	4,096
소계(A+B)	88,850	56,395	23,254	6,059	87,761	59,011	30,021	7,813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C)	27,190	10,109	1,373	209	29,022	12,188	1,987	294
실업부조를 받는 구직자(D)	35,872	16,535	11,772	2,083	32,981	17,334	14,019	2,934
소계(C+D)	63,062	26,644	13,144	2,292	62,003	29,523	16,006	3,227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구직자(E)	16,901	26,915	6,169	3,056	20,628	26,114	8,119	3,423
실업부조를 받지 않는 구직자(F)	5,886	2,836	3,941	711	5,130	3,375	5,896	1,162
소계(E+F)	27,788	29,751	10,110	3,767	25,757	29,489	14,015	4,586
실업급여가 없는 구직자 비율(%)	38	73	82	94	42	68	80	92
실업부조를 받지 않는 구직자 비율(%)	14	15	25	25	13	16	30	28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 아무것도 받지 않는 비율(%)	27	53	43	62	29	50	47	59

자료 : 국영고용센터(2012).

〈표 5〉 공공부조 통계

	수급자 수 (천 명)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	공공부조 지급액 (백만 크로나)	평균 수급 기간 (개월)
2010	437,100	4.7	11,600	6.4
2011	418,000	4.4	11,200	6.6

자료 : 스웨덴 사회감독청(Socialstyrelsen),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0, 2011.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공공부조의 총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4.7%이며 2011년은 4.4%이다. 이들의 평균 수급기간은 2010년에 6.4개월, 2011년에는 6.6개월에 달한다.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스웨덴의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독거가구이거나 편모가정이다. 2011년의 경우 편모가정 중 23%가 공공부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⁶⁾

2011년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자는 418,000명이었는데, 이 중 281,000명은 성인이며 나머지 137,000명은 아동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공공부조 성인 수급자 중 39%가 연령 18~29세 사이인데 이는 이들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자 중 약 9%는 새롭게 스웨덴에 거주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이다.¹⁷⁾

최근 스웨덴 사회의 평등한 의료 및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감독하는 사회복지위원회(Socialstyrelsen)의 발표에 의하면 이런 항목의 지출이 2012년 1월 8억 크로나에서 2012년 6월에 8억 7천만 크로나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려 9.2%가 증가한 수치이다.¹⁸⁾ 여기서 지적할 만한 사항은 공공부조는 보통 단기 생계 해결책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장기 생계 해결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스웨덴의 현재 경제상태가 악화되고 55세 이상자가 구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6) 스웨덴 사회복지위원회(Socialstyrelsen), 2012-08-17,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1”, <http://www.socialstyrelsen.se/Lists/Artikelkatalog/Attachments/18784/2012-6-58.pdf>

17) Ibid.

18) 스웨덴 사회복지위원회(Socialstyrelsen), 2012-08-17, “Månadsstatistik om ekonomiskt bistånd”, <http://www.socialstyrelsen.se/statistik/statistikefteramne/manadsstatistikomekonomisktbestand>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실업부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업부조제도는 실업보험, 공공부조제도와 관계가 밀접하므로 실업보험과 공공부조 수급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실상 실업자들 가운데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그리고 공공부조를 이용해 생활하는 비율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있듯이 실업자들 중 자신의 저축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 노동시장정책의 기본 이념은 노동우선주의(Arbetslinjen)이다. 본인이 스스로 노동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구직자에게 합당한 직업 안내, 구직자가 학력조건이 낮은 경우에도 적합한 교육 안내, 직업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으면 직업교육 안내를 하고 마지막으로 현금부조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든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든지 또는 외국인의 경우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노동시장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스웨덴 국가가 병가수당 또는 조기퇴직 연금, 공공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부조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일부이므로 실업부조제도도 그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111**